

전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96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962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가소151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2. 7. 13.

판결 선고 2022. 9. 21.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가소151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보관하였던 여러 물품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한 다수의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또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인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4. 5. 13. 원고로부터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목걸이 1점(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걸이의 시가 상당액인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주장).

2) 피고는 2014. 7. 31. 원고로부터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영치금에서 350만 원을 받아갔으나 위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주장).

나. 피고

1) 이 사건 목걸이는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준 35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가 아닌 곳을 하라고 준 비용이고, 피고는 실제로 곳을 하고 그 비용으로 위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전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4. 10. 28.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금 및 금품 보관확인서'(이하 '이 사건 금품 보관확인서'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는 이 사건 금품 보관확인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5. 원고가 확인인 피고에게 2014년 5월 13.일 보관한 불가리목걸이(800만 원)..(중략)..불가리반지(450만 원)..(중략)..18K목주팔찌2개(각 10돈씩)를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의 반환요청이 있을시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고 반환 및 지급을 거부할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4. 5.경 구속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포함한 다수(67개)의 금품을 보관하였고,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보관 중인 금품을 처분하여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품 보관확인서에 기재된 불가리 반지를 포함한 일부 금품을 처분하였고, 나머지 일부 금품의 경우에는 원고의 조카를 자처한 C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해당 금품의 확인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처럼 원고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원고가 보관한 대부분의 금품을 처분하거나 반환한 피고가 이 사건 금품 보관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목걸이와 목주팔찌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물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2013. 4.경부터 2015. 5.경까지 연인 사이였고, 피고가 구속 중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시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 원고와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이처럼 약 1년 가량 원고를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고와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귀금속을 선물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가 2015. 2. 9. 전주교도소 민원실에서 원고의 영치품 18K용무늬 금팔찌 1개를 반환받은 후 원고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다. 당시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위 팔찌를 끼고 다니라고 하여 끼고 다니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원고가 팔라고 한 다른 귀금속과 함께 팔아서 생활비와 면회 다니는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편지 1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편지에는 '그리고 내 팔찌 목걸이 팔찌 그게 차기 싫니..?'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팔찌와 목걸이와 같은 귀금속을 선물하였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전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4. 9. 11.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확인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는 위 현금보관확인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014년 7월 31.일 원고가 현금보관확인인 피고에게 영치금에서 내어 준 350만 원은 원고의 이혼소송(군산지원 2014드단2187호)에 대한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아 보관 중, D회사 E씨에게..(중략)..780만 원을 못주고 있다 독촉이 심해 원고에게 받아 보관한(2014년 7월 31.일)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350만 원을 원고의 허락, 동의, 승낙없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받은 350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20.일까지 마련하여 원고의 군산지원 2014드단2187호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즉시 35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후략)

그러나 앞서 든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① 원고는 당초 '2014. 7. 말경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굿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위 돈을 받아 굿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550만 원을 들여 굿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2017. 7. 31.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당초 고소한 내용과는 달리 '피고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가 굿을 하지 않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다시 고소하였으나, 2017. 12. 7.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보관확인증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피고에게 굿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35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실제 위 돈을 굿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김범준

판사신태광